

의안번호	2217779
의 퇴 인	이철규 의원
회 답 일	2026. 4. 28.
추계번호	26A1783
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의 직무가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8,900만원, 2031년 1억 8,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억 4,500만원(연평균 1억 8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소비자감시원(안 제54조)	189	189	189	189	189	945	18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4조(소비자감시원)	○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(제2항) － 4. 형식승인 및 검정여부 확인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4조(소비자감시원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에 “형식승인 및 검정여부 확인”이

추가될 경우의 재정소요는 산업통상부(국가기술표준원)의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추계함
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에 “형식승인 및 검정여부 확인”이 추가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산업통상부는 “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” 사업의 하나로 “소비자감시원 제도 운영”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개정안에 따라 동 사업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소비자감시원 제도 운영 사업비는 2026년도 예산 기준으로 2억 6,800만원으로, 소비자감시원 수당, 교육·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
 -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신규 형식승인 및 검정여부 확인 대상을 7,912건으로 추정하고 있는데, 이는 현행 소비자감시원 제도 운영 사업의 전체 점검 대상(11,244건)의 70.4% 수준임
- 소비자감시원의 직무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현행 사업비의 70.4%로 가정하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매년 1억 8,900만원(2026년도 예산 268백만원×70.4%)으로 추계됨
 - 신규 형식승인 및 검정여부 확인 대상 수는 현행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현행 소비자감시원 제도 운영 사업비가 연도별 증감이 있음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음
 - (사업비 추이) '21년 283백만원, '22년 269백만원, '23년 273백만원, '24년 267백만원, '25년 268백만원(소비자감시원 수는 연도별로 200명으로 동일)

[표 2] 소비자감시원의 직무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소비자감시원(안 제54조)	189	189	189	189	189	945	18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